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ESG 위원회 운영규정

2025. 08. 13

**KUMHO TIRE**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33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인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위원회 (이하 "ESG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 제 2 조 (직무와 권한)

- ① ESG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이하 "ESG")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② ESG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쟁점을 발굴·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검토한다.

### 제 3 조 (구성)

- ① ESG 위원회는 3 인 이상 5 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ESG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제 4 조 (임기)

- ① ESG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제 3 조에서 정한 위원수 또는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새로운 위원의 선임은 미달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달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 **제 6 조 (회의)**

- ① ESG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반기별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 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7 조 (소집권자)**

- ① ESG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제 1 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 소집은 회의, 장소 및 안건을 정하고 회의 2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 1 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제 9 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 상법 제 393 조의 2 의 제 4 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부의사항)

ESG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아래 각 호로 한다.

- ① ESG 경영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등의 수립
- ②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 ③ ESG 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 ④ ESG 관련 중대한 Risk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 ⑤ 핵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⑥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 11 조 연기, 속행의 결의

위원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 12 조 (이사회 보고)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②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사(위원회 위원인지 여부를 불문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

### 제 13 조 (의사록 작성)

- ① ESG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심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위원회 지원 및 전문가의 조력)

- ① 회사는 ESG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인력·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ESG 위원회 및 제 15 조의 사무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사무국)

- ① ESG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요 ESG 중장기 목표 및 관리 지표 설정 지원
  - 2. ESG 활동 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
  - 3. ESG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 4. ESG 위원회 소집통지, 부의 안건의 준비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등
  - 5. ESG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
- ③ ESG 위원회 및 사무국은 회사의 법무, 재무, 인사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정보 및 업무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6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23 년 0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25 년 08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